금융소비자보호법 이행 확인서

(FP용) (단위 : 만원)

6대판매 규제	개 념	과태료 최고기준		확인란 (<u>자필서명)</u>
다 : '' 적합성원칙 (금소법 제 17조)	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상품의 계약체결 권유 금지	법인 2,000	개인 1,000	
적정성원칙 (금소법 제 18조)	금융소비자가 구입하려는 상품이 소비자의 성별, 건강, 재무상황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을 경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을 통한 확인	2,000	1,000	
설명의무 (금소법 제 19조)	보험소비자가 알아야할 상품의 주요 내용(위험보장, 보험료납입기간, 환급 금 등)을 설명함	7,000	3,500	
불공정영업 행위금지(금소 법 제 20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 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7,000	3,500	
부당권유 금지 (금소법 제 21조)	적합성, 적정성 원칙과 관련하여 소비 자가 자신의 정보를 조작하도록 유도 하는 행위 고객에게 오인하여 판매하는 행태를 금지함	7,000	3,500	
광고규제 (금소법 제 22조)	대리점의 금융상품광고는 금지 대리점의 연계/제휴서비스 등을 부각 시켜 소비자가 직접 판매업자로 오인 하게끔 만드는 행위 상품비교설명 자료 작성시 보험사와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됨(미승인안내 자료 사용)	10,000	5,000	

금융소비자보호법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위반사항에 따른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법인 및 개인(FP)과태료에 대하여 배상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엠금융서비스 서울사업부(지점)

<mark>주민번호:</mark> - <mark>성명:</mark> (인)

㈜ 엠금융서비스 귀중